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315
----------	-------

발의연월일 : 2025. 8. 22.

발 의 자 : 이상식 · 박선원 · 이병진
이재강 · 문대림 · 임호선
김문수 · 부승찬 · 박정현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보수·징계·직무·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보수·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보수·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

름.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청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수정함.

주요내용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청법」에서는 직무·조직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위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공무원법안」(의안번호 제12313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및 박은정위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찰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부의 일부를 구성하는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인 검찰청의 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찰공무원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검찰청 지청(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대검찰청의 위치와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이하 “각급 검찰청”이

라 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각급 검찰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제2장 직무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檢事)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도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 재판 집행 지휘·감독

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검사 직무의 위임·이전 및 승계) ①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檢事長) 및 지청장은 소속 검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찰공무원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장이 요청하면 사법연수생으로 하여금 일정 기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③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급 또는 5급 일반검찰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일반검찰의 직무) ① 4급 이하의 일반검찰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일반검찰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자로 지정을 받은 검사의 소송 업무 보좌 및 이에 관한 기록, 그 밖의 서류의 작성과 보존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② 4급 및 5급 일반검찰은 검사를 보좌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한다.

③ 8급 및 9급 일반검찰은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검찰을 보좌한다.

④ 4급부터 8급까지의 일반검찰은 수사에 관한 조서 작성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이 자기의 의견과 다른 경우에는 조서의 끝 부분에 그 취지를 적을 수 있다.

제8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① 6급 이하의 일반검찰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

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6급 및 7급 일반검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및 9급 일반검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②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5급 상당부터 7급 상당까지의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8급 상당 및 9급 상당 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제9조(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① 검찰공무원은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검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감독의 적법

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검찰공무원은 검찰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제13조(정원)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4급 이하의 일반검찰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검찰총장 비서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비서관 1명을 둔다.

② 비서관은 4급 일반검찰이나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검찰총장의 명을 받아 기밀에 관한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제15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① 검찰청에 통역 및 기술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은 상사의 명을 받아 번역·통역 또는 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다만, 전산 및 방송통신 직렬의 5급 이하의 일반검찰로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소속 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접수한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1. 전산 및 방송통신 직렬의 5급 이하 7급 이상의 검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
2. 전산 및 방송통신 직렬의 8급 및 9급 검찰공무원: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제3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

제16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대검찰청

제18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9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0조(대검찰청 검사) 대검찰청에 대검찰청 검사를 둔다.

제21조(검찰연구관) ① 대검찰청에 검찰연구관을 둔다.

②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③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한다.

제22조(직제) ① 대검찰청에 부(部)와 사무국을 두고, 부와 사무국에 과를 둔다.

② 부·사무국 및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分掌事務)에 관한 사항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검찰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검사 또는 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를 통하여 그를 직접 보좌하는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제4장 고등검찰청

제23조(고등검찰청 검사장) ①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4조(고등검찰청 차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검사장을 보좌하며, 소속 검사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5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고등검찰청 검사) ① 고등검찰청에 검사를 둔다.

② 법무부장관은 고등검찰청의 검사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직제) ① 고등검찰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제28조(지방검찰청 검사장) ① 지방검찰청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둔다.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지청장) ① 지청에 지청장을 둔다.

② 지청장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0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을 보좌하며, 소속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1조(부장검사) ①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를 둘 수 있다.

②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부장검사를 둔다.

③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그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검찰총장은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의 직제 및 해당 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검찰공무원, 과건 내역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각각 검사를 둔다.

제33조(직제) ① 지방검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청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청에 과를 두며, 과의 설치와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부에 과를 둘 수 있으며, 과의 설치와 분장 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